

# 민간조사(탐정)제도의 도입방향

- 경비업법 개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이 상 원\*

### <목 차>

I. 서론	IV. 분석과 바람직한 경비업법의 방향
II. 이론적 고찰과 입법화를 위한 노력	V. 결 론
III. 관련업계 현황과 각국의 제도 운영	

### <요 약>

민간조사제도는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홍신소 등의 기능을 대체하고 경찰 기관 등 형사사법 기능을 보완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의 길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간조사관들의 실질적인 활동과정에서 시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민간 경비의 한 분야에 속하는 민간 조사는 선진국에서는 경찰 및 민간 경비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 왔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가입국에서는 민관조사와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여 민간조사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법 제정을 위한 여러번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러사정으로 민간조사제도가 시행되지 못했다.

2008년 9월에 제출된 이인기 의원의 경비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전문성과 시간적 제약으로 본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문자격을 취득한 민간조사관에게 사실 조사서비스를 맡겨서 사생활 침해도 방지하고 영업의 적정성도 도모하고 민간조사업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회에 제출된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바람직한 경비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법안의 문제점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길 희망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학계, 관련기관의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 민간경비, 민간조사, 경찰, 경비업법, 민간조사관

\*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 I.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일본의 영향으로 홍신소라는 이름의 업종이 다른 사람의 뒷조사, 채권 회수 등을 비합법적으로 행하였는데, 이 업종이 홍신업단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위반 하는 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자, 1970년대부터 민원서류 대행, 택배 서비스 등 단순 대행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심부름센터가 출현하였다(황정익, 2005: 7-8). 이 중 일부의 심부름센터나 홍신소가 개인의 뒷조사, 도청, 신상 정보유출, 납치, 협박, 청부살인 등의 불법 행위를 하는 해결사의 역할까지 관련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불법 음성화 된 업무를 양성화 하여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므로써 국가에서 공인자격을 부여받은 전문가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케 하면서 민간조사 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것이 최근의 흐름인 것이다. 민간경비분야는 한국에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활성화 되어있는 반면, 민간조사업은 로스쿨 도입, 공판중심주의, 민간경비시장의 국내 개방 등으로 도입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최현락, 2008: 1-2) 17대 국회에서 도입 논의가 진행되다가 회기 종료로 입법화 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에 의해서 경비업법 개정안 발의(2008. 9. 25)로 다시 논의에 불을 붙인 상태에 있다.

이 민간조사 제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홍신소 등을 대체하고 경찰기관 등 형사사법기관의 기능을 보완하여 국민의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간조사관들의 실질적인 활동 과정에서 시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이상원, 2007: 1-2).

본 연구는 2008년도 9월 국회에 제출된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바람직한 경비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과 입법화를 위한 노력

### 1. 이론적 고찰

민간경비는 공경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외국에서는 Private Security(사경찰, 사경

비)로 불리고 있다(이상원, 2006). 민간경비는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의뢰인(special client)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른 경비 및 안전 Service를 행하는 개인, 단체 및 영리 기업을 말하며, 고객들의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을 보호하며 범집행적 측면 보다는 범죄예방적 측면에서 역할을 수행한다(Harvey Burstein, 1996). 홀크레스트 보고서는 민간경비를 다음의 9개 영역, 즉 자영의 경비, 경비와 순찰서비스, 경보응답서비스, 민간조사(사설탐정), 경비수송서비스, 자물쇠업, 컨설턴트, 경비기기의 제조와 유통,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William C. Cunningham, 1990).

### 1) 수익자 부담이론(Profit-Oriented Enterprise Theory)

수익자 부담이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 기구의 일부로서 경찰이 갖는 근본적인 성격과 역할기능, 즉, 경찰이 개개인의 안전과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 이라는 통념을 거부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원칙적으로 거시적 측면에서 질서유지나 체제수호등과 같은 역할과 기능만으로 한정하고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차원이나 집단과 조직 등 회사 차원 등의 안전과 보호를 해당 개인이나 조직이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는 역할 부담론적 이론이다(Shearing & Stenning, 1981). 수익자 부담이론은 국가의 재정적 위기가 사회안전보호 및 범죄예방 능력을 충족 시키지 못해서 국민 스스로가 민간경비분야의 산업이 성장한다고 보는 이론이다(김동규 · 이인영, 1999).

민간경비 산업이 발전하는 원인으로서는 전반적인 국민소득의 증가, 민간경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실제적인 범죄의 증가, 민간경비제도와 서비스의 유용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 변화와 같은 조건들을 들 수 있다(이윤근 외, 2007:34).

### 2) 민영화 이론(Theory of Privatization)

민영화이론은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이념에 대한 반성으로서 국가의 역할범위를 축소하거나 재정립해주는 이론으로서 현재까지 세계적인 추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대신 민간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을 민영화로 정의하고 있으며 Kamerman 과 Kahn은 민영화의 개념을 광의와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정부의 규제를 축소하고 정부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광의의 민영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분야로 이전되는 것을 협의의 민영화로 규정하고 있다(이상원 · 이승철, 2004: 3-4).

현대사회의 민영화 활성화의 배경으로서는 첫째, 다원화 시대에서 각국의 정부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부의 지나친 비대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으며, 자원의 비효율적인 공급으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민영화를 통하여 서비스에 대한 공급을 줄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이 확대되어 민간의 활

동이 활성화 될 수 있으며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셋째, 민영 화함으로써 국민들이 공급과정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정부의 일반적인 공급으로 인한 공급주체와 국민간에 존재하는 괴리를 좁힐 수 있고, 소비자들은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되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이용조 외 3인, 2003: 394-395).

치안질서유지 업무도 국가권력에 의해 수행되어야하는 필수적인 부문을 제외하고 민간 이양이 가능한 부분을 민간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예로서 특수경비나 민간조사분야).

### 3) 공동생산이론(Co-Production Theory)

Brundney(1984:466)는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기관의 관료와 시민이나 집단에 의한 합동적인 생산(joint production)을 공동생산이라고 정의하였다. 최근, 치안환경과 관련하여 치안서비스의 생산과정에 있어서 경찰과 같은 공공부문(public sector)의 역할증대와 동시에 민간부문(private sector)의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경찰이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민간부문은 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citizens)과 민간경비(private security)분야를 들 수 있다(이상원, 2005).

## 2. 입법화를 위한 노력

한국의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화 노력은 여러번에 걸쳐서 시도되었는데 그 예로 1999년 한나라당의 하순봉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2005년, 한나라당의 이상배 의원의 민간조사법안, 2005년 열린우리당의 최재천 의원의 민간조사법안과 2008년 9월에 발의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의 경비업법 개정안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상배 의원안과 최재천 의원안의 핵심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이상배 의원의 민간조사법안.

2005년 9월, 한나라당의 이상배 의원은 민간조사법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용어의 정의와 업무

민간조사원이란 제3조(업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하기 위해 제 5조(자격)의 규정에 의

한 민간조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 민간조사업은 다른사람의 의뢰를 받아 제 3조 (업무)에서 규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조사원의 업무의 범위는

- 범죄 및 위법행위와 관련된 조사,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 확인,
- 화재·사고·손실·명예훼손의 원인과 책임의 조사,
- 사람의 사망·상해 및 물건의 손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소재,
- 소재가 불명한 친족의 소재파악 등과 관련된 조사,
-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 개인에 관한 정보 중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로 정하고 있다.

## (2) 자격

제6조(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의 규정에 의한 민간 조사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민간조사원의 자격을 지닌다.

## (3) 민간조사원 자격시험(법안 제 6조)

민간조사원의 자격시험은 경찰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조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다.

-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검찰청, 소방방재청, 대통령 경호실, 국가정보원 소속공무원 및 군인 또는 형사소송법상의 특별 사법경찰관리로서 정보수집, 수사 및 조사업무의 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공무원으로서 감정 및 연구 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형법학·범의학·법과학·경찰학·범죄학·소방학·안전관리학에 상당하는 분야에서의 연구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
- 제 18조에 규정된 업무보조원으로서 종사 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등한 연구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4) 등록·교육·감독(제8조, 제31조, 제32조)

민간조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민간조사업을 개업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사무소를 설치하여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민간조사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조사원은 이러한 교육을 대신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 할 수 있다.

민간조사업자는 경찰청장의 감독을 받게 되어있고, 경찰청장은 민간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5) 업무보조원(제18조)

민간조사업자는 그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은 자를 업무보조원으로 둘 수 있다. 또한 민간조사업자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준을 위하여 보조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민간조사업자의 행위로 본다.

2) 최재천의원의 민간조사업법안

2006년 3월, 열린우리당의 최재천 의원은 민간조사업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하였다.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어의 정의와 업무(제 2조, 제 3조)

“민간조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제 3조(업무)에서 규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조사원”이라 함은 제 13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제 5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조사원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민간조사업자”라 함은 민간조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제 8조(등록)의 규정에 따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민간조사원의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사이버 범죄, 보험범죄, 지적재산권 침해, 기업회계부정 등 각종범죄 및 위법행위의 조사.
- 사람의 사망·상해, 화재, 교통사고, 물건의 멸실·훼손 등 각종 사고의 원인 및 책임의 조사.
- 분실·도난·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
- 행방불명자, 상속인, 소유불명재산의 소유자, 국내 외 도피사범 등 특정인에 대한 소재탐지.
- 법원 등에서 사용 될 증거자료의 확보.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2) 자격(제 5조)

제 6조(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의 규정에 따른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민간조

사원의 자격을 가진다.

(3) 자격시험(제 6조)

-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은 법무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 7호(민간조사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다.
-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은 제 1차 시험(필기), 제 2차시험(실무) 및 제 3차 시험(연수)로 실시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1. 검찰청 직원, 경찰공무원, 대통령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및 형사소송법상의 특별사법 경찰관리로서 정보수집 및 수사직무의 경력에 통산하여 7년 이상인 자.
  2. 대학에서 경찰학·범죄학·형사법학·경호경비학·안전관리학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강의경력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자.
  3. 제 3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에 의하여 정한 민간업체에서 조사 등의 업무를 취급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등록·교육·감독(제 8조, 제 29조, 제 30조)

- 민간조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민간조사업을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소를 설치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법무부 장관은 민간조사원의 자격 및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다.
- 민간조사업자는 법무부 장관의 감독을 받아야 되고, 법무부장관은 민간조사업자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5) 사무원(제 22조)

민간조사업자는 그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은 자를 사무원으로 둘 수 있고, 민간 조사업자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원을 지도·감독 할 책임이 있다.

### Ⅲ. 관련업계 현황과 각국의 제도운영

#### 1. 현황

미국,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민간조사분야를 민간경비의 한 분야로 인식하여 민간조사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탐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OECD가입 후 민간조사(탐정)제도는 실질적으로 개방되었으나 아직 “탐정”이나 “민간조사원”이라는 용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정인식, 2008:3).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민간조사업과 관련된 제도가 없다보니 심부름 센터나 홍신소 등이 민간조사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불법 및 위법행위나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고 국민들에게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외국의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위기관리 센터나 컨설팅 등의 간판을 걸고 민간조사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장석현, 1007:42).

이러한 현실에서 제도의 부재, 국가의 관리·감독의 부재로 인해 관련업계의 난립과 무질서는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심부름센터 현황 (2008. 5. 30기준)

기관 시·도	파란닷컴	네이버	렛츠 114	평균
서울	511	540	573	541
부산	242	249	214	235
대전	107	111	116	111
대구	104	108	86	99
광주	83	92	75	83
인천	133	138	144	138
울산	76	68	65	69
경기	551	552	651	584
강원	94	99	113	102
경남	194	216	192	200
경북	96	102	108	102
충남	72	89	78	79
충북	64	64	62	63
전남	85	88	95	89
전북	119	110	133	120
제주	24	25	35	28
합계	2555	2651	2740	2648

출처 : 경찰청 수사국 내부자료



심부름센터의 현황을 살펴보면 네이버의 경우, 서울이 540개소, 부산이 249개소, 대전이 111개소, 대구가 108개소, 광주가 92개소, 인천이 138개소, 울산이 68개소, 경기도가 552개소, 강원이 99개소, 경남이 216개소, 경북이 102개소, 제주가 25개소로 국내에 2,651개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관련업체들이 지하에서 운영된다보니 이들의 시장 매출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국제청 과세기준을 위한 업종분류표에는 '코드 930916를 심부름센터, 홍신소로 분류하고, 코드 749200탐정, 경호 및 경비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과세 정보보호를 위해 등록업체수와 관련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2. 각국의 제도 운영

### 1) 미국

미국은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로서 경찰제도도 자치제 경찰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조사(탐정)제도 역시 각 주마다 자격 요건, 업무의 범위, 면허취득 유무, 시험제도 등이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조사관(탐정)은 전직 경찰, 전직 법집행기관의 수사관, 군헌병 출신 등이 은퇴 후에 자격 및 면허 취득하여 많이 활동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설탐정의 수는 2006년 통계로 52,000명으로 밝혀졌다(경찰청 수사국, 내부자료, 2008).

뉴저지주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업무의 범위

사설탐정업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사설탐정 사무소 운영 또는 고용의 목적이거나 조사에 대한 보수의 목적 또는 정보의 획득 목적을 위한 사업을 의미 한다(Private Detective Act of 1939, §45:19-9).

#### (2) 자격 요건

뉴저지 주는 Private Detective Act of 1939(사설탐정법)이라는 성문법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Private Investigative and security Service장에 규정함), 사설탐정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25세 미만자에게는 면허가 발급되지 않고, 개인 또는 회사 구성원이나 법인의 직원이나 관리자 중 적어도 1명이 조사원 또는 주, 카운티, 관련 지방자치 단체의 수사요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을 시에도 면허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Private Detective Act of 1939, §45:19-12), 중범죄나 위반사항을 범한 자와 그로 인

해 초래하는 법률상의 실격으로서 유죄 선고 후에 뒤따르는 행정사면을 받은 자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Private Detective Act of 1939, §45:19-16).

- 권총이나 기타 위험무기의 불법사용, 운반 또는 소지
- 강도용 연장을 제작 또는 소지
- 장물 취득
- 건물 불법침입
- 탈옥 원조
- 습관성 마약의 불법소지 또는 유통
- 주 경찰청장이 그 면허에 대한 사설탐정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거부한 자.
- 미 연방 정부 또는 각 주, 미연방의 영토 및 속령을 대상으로 하여 이미 행해졌거나 협박당하거나 행해진 가정하에 있는 등의 범죄 또는 불법 행위.
- 개인, 회사, 법인의 협회, 단체, 사회 혹은 그룹에 관한 신분, 습관, 행동, 활동, 소재, 교우관계, 교재, 거래, 평판 또는 성격.
- 증인 또는 다른사람에 대한 신빙성
- 실종자의 행방
- 분실 혹은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 또는 회수
- 개인, 회사, 법인과 협회, 단체, 조직 또는 공식 멤버나 대표와의 교우관계.
- 피고용인, 요원, 청부인과 하청인의 행동, 정직성, 효율성, 충실함 또는 활동에 대한 조사.
- 조사위원회, 판정위원회, 중재위원회 또는 민·형사 재판에서 사용되는 증거의 확보

### (3) 면허

뉴저지 주, 인디애나 주, 플로리다 주, 버지니아 주 등 일부 주는 면허시험 없이 일정자격과 경력만으로 면허를 발급하여 주며, 주 정부내의 거주자인 주민들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이상원·김상균, 2006:58-59)

사설탐정업을 원하는 개인, 조합, 법인 등은 주 경찰청장으로부터 사업운영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Private Detective Act of 1939, §45:10-10), 각자는 서류를 신청해서 경찰청의 조회, 조사결과가 합당하다고 판단 될 시에 경찰청장은 면허를 발급, 교부하게 되어있다.

## 2) 영국

영국에서는 국민이 탐정이 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이나 규제가 없기 때문에 문호가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사업무나 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지니고 있는 전직경찰, 전직 수사

및 정보기관 출신들이 탐정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다(이상원, 2007:9-10). 따라서 수사전문 기법이나 전문지식을 교육시키는 탐정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하여 연수를 받고 이러한 연수를 통하여 국가 면허국에서 발급하는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NVQ : 국가직업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2006년부터 탐정업에 대해서도 NVQ 3등급(1~5등급) 즉, level 3를 취득해야만 탐정업을 개업할 수 있다. 영국에는 2008년 기준으로 탐정업체가 465개가 영업 중이고 이에 종사하는 탐정들이 1만여 명이 있으며 민간조사업계의 시장규모는 25억 파운드(약 5천억 원, 2004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경찰청 수사국 내부자료, 2008). 영국 민간경비산업법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의 Schdule2(보칙2)의 Part I(1부)에서 Private Investigation(탐정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 (1) 업무의 범위

영국의 민간경비 산업법 Schedule2, Part1, §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는

- 특정인물의 활동이나 소재에 대한 정보수집
- 멸실된 재산상황 또는 그로 인한 피해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감시, 조회 또는 조사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사설탐정은 사람, 사람의 활동이나 소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감시, 질문, 조사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 Section1)으로 정의 된다.

### (2) 자격요건

영국에서는 탐정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서 만 18세 이상자로서 신원증명서, 범죄경력 증명서(유죄판결, 경고가 2년간 없어야하고 중대범죄:<폭행, 무기, 마약, 절도, 관명사칭>의 경력이 5년간 없어야 함.), 탐정으로서의 적합한 능력을 요구한다.

### (3) 면허

영국의 민간경비산업법 제 3조에 의하면 탐정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탐정업을 영위하려는 사람도 당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탐정업에 대한 면허권한은 민간경비 산업면허국(SIA)에 있으며, SIA는 민간경비산업의 인가와 승인에 관련된 업무, 이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활동과 효율성 감시, 민간경비산업분야의 훈련기준, 채용 관리의 수준설정과 승인, 민간경비산업 기준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권고와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 Chapter12).

### 3) 호주

호주에서는 민간조사분야 역시 자격제도(자격증)로 운영되고 있으며, AQTF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록된 훈련조직을 위해 국가적으로 인정된 표준절차를 제공한다. 호주의 경우 탐정과 관련된 법은 주마다 약간씩 다르게 운용하고 있는데, New South Wales 주는 The Commercial Agents and Private Inquiry Agent Act 2004, Queensland 주는 The Security Providers Act 1993, Victoria 주는 Private Security Act 2004, Western Australia 주는 The Security and Related Activities Act 1966을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다.

#### (1) 업무의 범위

호주의 탐정관련법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Queensland 주의 경우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Queensland 주의 Security Providers Act 1993의 Part1 (Preliminary)§4에서 Security Provider로서 Crowd Controller(군중관리자), Private Investigator(사설탐정), Security Officer(경비원), Security Firm(경비회사),를 규정하고 있고 Security Provider Act 1993의 §6에서 사설탐정은 보수를 받고 다른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제공해 주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탐정의 정의로서, Queensland 주는 사례금을 받고 타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해주는 사람이지만,

- 사례금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지 않거나 제공을 하지 않는 개인의 고용인.
- 다른사람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고용인.
- 사례금을 위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기록이나 자신의 고용주가 가진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탐정이 아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Security Provider Act 1993, §6).

#### (2) 자격요건

각 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Queensland 주의 경우,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 주지사가 승인한 교육훈련과정 이수, 면허를 소지하기에 적절한 사람이어야 하며, 모든 응시자들은 전과조회를 받도록 되어 있다. Victoria 주의 경우는 19세 이상, Investigative Services에서 CertificateIII 또는 그 이상의 Certificate을 이수해야 하고, 전과조회를 받도록 되어 있다.

(3) 면허

호주에서 시큐리티 제공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면허가 필요한데 그 면허는 군중관리자(Crowd Controller)면허, 사설탐정면허, 시큐리티경비원 면허, 시큐리티 회사 면허이다. 호주에서 사설탐정의 면허는 New South Wales 주, Victoria 주, Western Australia 주에서는 관리청은 주 경찰이기 때문에 면허는 주 경찰국에서 발급되고 통제되어진다.

## IV. 분석과 바람직한 경비업법의 방향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의 내용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경비업법의 방향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제 2조(정의)

법안 제 2조(정의)에서,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 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바. 민간조사업무를 들고 있다.

민간조사업무는

- 미아·가출인·실종자에 대해 가족의 의뢰에 의한 소재파악.
- 소재가 불명한 물건의 소재파악.
- 의뢰인의 피해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 조사를 수행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안에서는 업무범위를 별도 조항으로 다루지 않고 간단한 업무정의를 정한 것은 기존 경비업에 민간조사업을 포함시키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또, 업무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동법 제 2조의 특수 경비업무에서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처럼 업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세분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제 2조(정의)는

- 미아·가출인·실종자 가족의 의뢰에 의한 소재파악(수정)
- 소재가 불명한 물건의 소재파악

-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추가)
- 의뢰인의 피해확인, 그 원인에 관한 사실조사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수정)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제 3조(법인)

법안 제 3조(법인)에서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조사제도도 민간경비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경비업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민간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민간조사업을 경비업에 개정안으로 포함시키다 보니 민간조사업도 다른 경비업종과 마찬가지로 업무의 공공성 때문에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판단 되지만, 현실적으로 동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간조사관의 업무범위 정도라면 법인만이 민간조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또 경비업자만 이익이 된다는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 의하면 민간조사관의 위치가 경비회사의 한 부서의 직원으로 인식 될 우려도 있고 민간조사관의 위상도 낮게 보여지므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법인 외에 개인도 영위 가능케 하여 무자본 민간조사 인력의 제도권 내로 원활한 진입을 도모하고 민간조사업자간 양질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 3. 제 20조(결격사유)

제 20조(결격사유)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조사관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민간조사관 자격이 취소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시험시행연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인자로 되어있는데, 민간조사업무의 특성상 사생활 침해나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나 위법행위의 위험이 내재하

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므로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한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연령, 즉 군 복무 연령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할 듯 하다.

#### 4. 제 5장 민간조사관 장에서 제 21조(민간조사관 자격시험)

제 21조 ①에서 민간조사관 자격시험은 경찰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제 21조에서 ②민간조사관 자격시험의 과목, 방법,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그 밖의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21조 ②를 민간조사관의 자격시험은 제 1차 시험(이론), 제 2차 시험(실무)으로 구분하여 실시 한다. 민간조사관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방법,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그 밖의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함이 타당할 듯 하다. 그리고 제 5장, “민간조사관”장에 “민간조사 보조원”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민간조사 보조원은 민간조사관의 일정한 감독 하에 제한된 범위내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 현장활동이 많은 민간조사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또 변호사, 세무사 등과 같이 국가자격시험에 통과한 전문직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 업무를 보조하게 할 업무보조원을 두는 것이 필요한데도, 동법 개정안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 현재 국내제도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도 보조인력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바, 민간조사관이 모든 업무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민간조사관 감독하에 제한된 업무를 보조케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5. 제 7조(경비업자의 의무)

제 7조(경비업자의 의무) ②와 ④를 구분하여 규정 할 필요가 있다. 즉, 일반 경비업자와 민간조사업자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규정 할 필요가 있다.

②제 2조 제 1호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업 중 하나를 영위하는 경비업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성실한 업무수행 및 위법 부당한 업무의 도급거부.
2.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불공정 계약금지.
3. 경비업자의 임직원 이거나 임직원 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금지.
4. 허가받은 업무외의 소속 임직원을 종사케 하는 행위금지.

④제 2조 제 1호 바목의 업을 영위하는 경비업자(이하 “민간조사업자”라고 한다.) 및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에서 다음사항을 추가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9. 민간조사관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공정 계약금지.
10. 성실한 업무수행 및 위법 부당한 업무의 도급거부.
11. 본업의 임·직원 이거나 임·직원 이었던자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행위금지.

## 6. 제 28조(협회설립 등)

제 28조 ①에 경비업자는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소속원의 자질 향상 및 교육훈련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8조 ③“협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에서 4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1. 업무의 연구
2. 교육·훈련 및 그 연구
3.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바 그 중[4.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을 민간경비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그 의미를 넓게 잡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여기에서 민간조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고, 경비업무 분야별로 별도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한지의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현행 경비업법 제 22조(경비협회, 개정안 제 28조)에 경비협회의 설립근거를 두고 있지만, 단일 협회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수 협회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간조사협회, 특수경비협회 등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7. 제 26조(민간조사관 자격 취소)

제 26조(민간조사관 자격 취소)에서 ①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조사관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다.

2. 제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인을 설립하지 않거나 소속되지 않고 민간조사업을 영위한 자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민간조사업을 영위 할 때는 벌칙 제 35조



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민간조사관 자격취소 요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민간조사업을 영위한 자로 수정함이 타당할 듯하다.

## V. 결 론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의 한 분야에 속하는 민간조사(탐정)는 선진국에서는 경찰 및 민간경비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왔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가입국에서는 민간조사와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여 민간조사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각종 범죄와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개인과 기업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정부의 공권력과 형사사법 기능만으로 자신의 안전을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의해 문제해결책으로 자신들이 직접나서거나 흥신소나 심부름 센터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보니 사생활 침해, 인권침해, 불법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불법·음성화된 업무를 양성화하여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어서 민간조사 업무를 행하자고 하는 시도가 지금까지 있어 온 것이다.

9월 25일에 발의 된 이인기 의원의 경비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더라도 전문성과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한계로 인해 본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국가자격을 취득한 전문가인 민간조사관에게 사실 조사서비스를 맡겨서 사생활 침해도 방지하고 영업의 적정성도 도모하고 민간조사업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관련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법안의 문제점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길 희망한다. 민간조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관심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 학계, 관련기관의 공동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경찰대학(1998), 경찰방법론, 서울 : 경희종합인쇄
- 경찰청 수사국(2008) 내부자료
- 이영조 외 3인(2003), 행정학원론, 서울 : 도서출판 학우
- 이상원(2005), 범죄예방론, 서울 : 대명출판사
- 이윤근 · 김창윤 · 조용철(2007), 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서울: 엑스퍼트
- 이상원 · 김상균(2006), “공인탐정 교육훈련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제 8회 춘계세미나 발표자료 : 58-59.
- 이상원 · 이승철(2004),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 4호, 한국 민간경비학회 : 3-9.
- 이상원(2007), “민간조사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학술세미나 : 11-25.
- 장석현(2007), “민간조사업 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학술세미나 : 41-47.
- 정일석(2008), “민간경비 영역확장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방안”, 박사학위청구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3-20.
- 최현락(2008), “민간조사업의 도입 모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청구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pp.1-20.
- 황정익(2005), 공인조사(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05-01, 치안정책연구소, pp.7-8.
- Burstein Harvey(1996), Security : Management Perspective,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Inc.
- Green, Gion(1981), Introduction to Security, Woburn, MA : ButterWorth Inc.
- Mendel Robert(2001), “The Privatization of Security”, Armed Forces & Society, 28 : 130-150.
- William C. Cunningham, John J. Strauchs and Clifford W. Van Meter (1990), The Hallcrest Report II : Private Security Trends 1970 to 2000, Newton, MA : Butterworth - Heinemann : 127-132.
- The Private Detective Act of 1939.
-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
- The Commercial Agents and Private Inquiry Agent Act 2004.
- The Security Providers Act 1993.
- The Private Security Act 2004.
- The Security and Related Activities Act 1996.

## ABSTRACT

### **A Study on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Lee, Sang-Won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which is part of private security has developed together with police, and OECD countries except South Korea has developed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establishing by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In Korea, there was several attempt to establish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but it was not accomplished because of private security circumstances.

In this study, the chapter I is introduction, theoretical background is in chapter II, chapter III is the oper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of the developed countries, analysis and dire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in chapter IV, and conclusion in chapter V.

To introduce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t is required to discover the problem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mentioned in this article and to develop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by collecting the opinion of citizen, academic world, and the related agency. It is necessary to associated interest and effort of citizen, academic world, and the related agency for introdu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Key Word :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Police, Private Security, Private Investigator